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2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2. 지원자격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 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을 통해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 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다.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하며, 지원대상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을 통해 최대한도(1억원)를 지원받은 사업장
- ▶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 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한도(1억원)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4. 지원내용

□ 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구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이상)
보조금 산정	① 지원비율 적용된 공정 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정산 보조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안전투자 혁신사업('21~'23)으로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 ※ 예시) '22년도 8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2천만원

① (개선비용)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등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원재료 등의 입·출고, 검사, 부대공정 등 제조공정이 아니거나 중고·재생 기계·기구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불가 사항>

-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가·기계기구 및 수공구
- ▶ 바닥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방음공사, 환기장치공사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개선
- ▶ 자사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 중고 또는 재생된 기계·기구

② (원가검토비용)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정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 공정 개선 총 소요비용과 정산비용을 비교하여 일정금액 지원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제출 및 원가정산비용 지원>

▶ 투자완료 시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검토(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 충족 기관(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

** 결정금액, 실거래금액, 정산금액(원가정산 보조금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보조금 확정

▶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

-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한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작성에 소요된 ①실제 금액(부가세 제외)과 정산 금액 구간에 따라 ②공단에서 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작성 비용 인정단 지원한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총 소요금액	4천만원 미만	4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인정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예시)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①작성비용 50만원 > ②공단인정 60만원 ⇒ 50만원 인정

-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사업분야에 따라 지원비율(50%, 40%) 적용된 금액으로 지원

□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제원 사정에 따라 지원 가능)

5.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2개월 연장 가능) 내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선금 지급)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 사업신청 단계에서 선금 신청금액 입력 시 별도의 선금 신청절차 생략
- (지급보증보험) 결정 보조금액 이상으로 지급보증보험 가입
 - ※ 가입비용은 사업주 부담 보조결정 최소에 따른 보조금 환수 시 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3. 25.(월) 09:00 ~ 5. 24.(금) 18:00
- (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부안내) ①세부공고문(덧붙임) 및 ②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 (신청문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7.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덧붙임>

「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세부 공고(2차)

-원청직접·상생기금연계·상생협력사업 지원-

1.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사내하청이 아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사업장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소재지의 경우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불가
 - *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표출되는 상시근로자수가 0명일 경우, '23년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매월 말일 기준)을 제출하여 상시(평균)근로자수가 1명 이상임을 증빙 가능
 -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유효분예 한함) 제출[‘중소벤처24(smes.go.kr)’ 참조]

구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내용	사외하청이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공단과 원청(또는 비영리공익재단)이 지원하여 위험공정 개선 ① 공단 40% + ② 원청 10% + ③ 자체부담 50%
비고	※ 주체별 비율은 총 소요비용이 2억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된 것으로 총 소요비용에 따른 지원한도와 원청의 지원금액에 따라 원청 및 자체부담에 대한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원청 직접지원)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을 통해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원청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도 제조업인 사외하청을 지원할 수 있음

- 공정개선 총 소요비용 중 공단이 40%, 원청 등이 10%~60%를 부담하여 사외하청의 위험공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원청 직접지원		
	총 소요비용(100%) 中		
부담비율	공단 40%(한도 내)	원청 10%~60%	사업장(자체부담) 50%~0%
비고	투자완료 시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 제출		

-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대기업 등 출연기업으로부터 조성된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기금*을 운영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험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예시) 출연기업인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 공정개선 총 소요비용 중 공단이 40%, 기금운영기관이 10%~60%를 부담하여 사외하청의 위험공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총 소요비용(100%) 中		
부담비율	공단 40%(한도 내)	기금운영기관 10%~60%	사업장(자체부담) 50%~0%
비고	투자완료 시 기금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 제출		

- (상생협력사업 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공정개선 총 소요비용 중 공단이 40%를 부담하고 원청은 10%를 부담하여야 하나,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인정하여 사외하청의 위험공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		
	총 소요비용(100%) 中		
부담비율	공단 40%(한도 내)	원청 (매칭지원금액 인정)	사업장(자체부담)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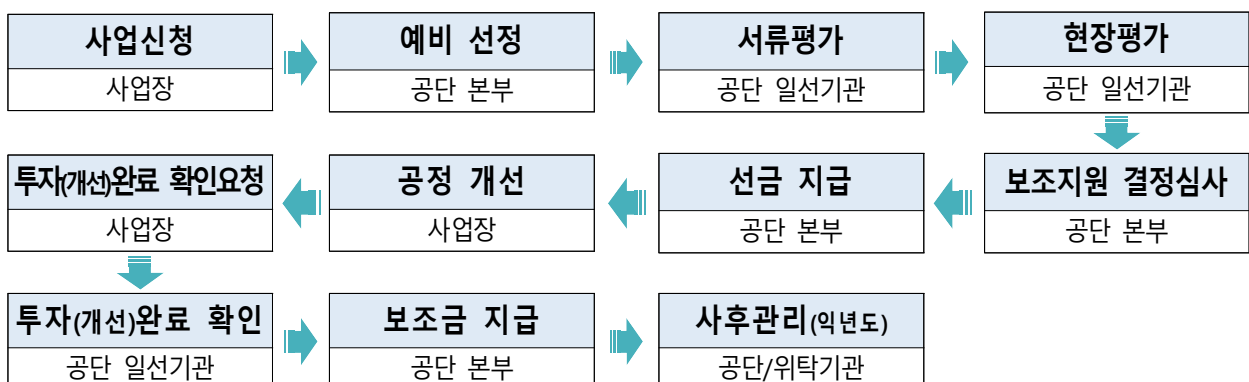
2. 예비선정 점수기준

- 사업장 위험도·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정부정책 부합도 등에 따라 점수 부여

항목	A 사업장 위험도	B 산재보험 가입기간	C 정부정책 부합도	D 가점
배점(110점)	50점	30점	20점	10점
비고	부여되는 점수는 사업공고일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자동부여(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① 사업장 위험도(50점): 산업안전 빅데이터·AI 분석에 따른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 사업장 규모별 위험군(고·중·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구간별 편차 1점)
- ② 산재보험 가입기간(30점): 산재보험 성립연월을 기준으로 오래된 사업장일수록 고득점
 - ※ 5년 이하 6점(기본점수), 1개월마다 0.1점 부여(10년 이상 경과 시 25점 추가 부여)
- ③ 정부정책 부합도(20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 부합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 위험성평가 인정(10점), 5인 미만(5점), 산단대개조 입주(5점)
- ④ 가점(10점): 재정지원 수혜 사업장 확대, 안전제품 도입 및 노후 기계 퇴출 시 점수 부여
 - ※ 최초 신청(4점), KCs·S마크 인증품 도입(3점), 리프트·노후기계6종*(3점)
 - * 30년 이상 노후('93.12.31. 이전 생산)된 프레스·전단기·크레인·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를 폐기하는 조건

3. 사업절차 및 방법



가. 사업신청(사업장)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anto.kosha.or.kr, 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함)으로 신청서 제출
 -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회원구분 ‘신청 사업장’) 후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 동일한 소재지에 복수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개선공정 공유가 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합산 **최대한도 8천만원** 적용(보조결정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 원청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 신청
 - ※ 원청 직접지원의 경우 원청으로부터 작성된 ‘원청지원 예정확인서’ 제출
 - ※ 단,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유형 신청 시 해당 기금 연계 기관을 통해 신청
- (예시) <상생협력재단 지원유형 신청 방법>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 02-368-8489
- 사업 신청 시 산재보험 가입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값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가점에 해당하는 증명 제출 시 가점 부여
 - ※ 예비선정 이후 서류평가 시 가점 관련 서류가 신청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예비선정 취소 및 신청서 반려조치

나. 예비선정(공단 본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의 경우 해당 사업 신청 순으로 선정 (단,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 시 부여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 매 선정마다 신청 시작일로부터 해당 선정일자까지 접수된 건을 취합하여 선정(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월 1~2회 선정 예정)
- 예비선정 이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선정 취소

다. 서류 평가(공단 일선기관)

-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내용을 토대로 신청자격 등 적정여부 확인
- 신청자격 비해당, 서류 미첨부, 지원불가 품목 신청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이 진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서류평가 보완 또는 부적합 사항>

-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점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신청한 경우
※ 예시) 원청지원 예정확인서 미제출 또는 상시근로자 0명 사업장, 인증 비대상품 신청 등
- ▶ 지원불가 품목을 신청하거나 서류 등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

라. 현장 평가(공단 일선기관)

- 신청서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공정개선 적정성 등 확인
 - 해당 소재지에 개선대상 공정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지원된 이력이 있는지, 개선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

<현장평가 부적합 사항>

- ▶ 해당 소재지에 신청한 개선대상 공정을 보유하지 않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와 현장평가 시 확인한 장소가 다른 경우
- ▶ 사업 신청 내용(또는 사업계획서)과 현장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마.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바. 선금 지급(신청 시)

- 지원이 결정된 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선금 지급 희망 시 보조결정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법인은 법인명)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선금 지급 신청
 - 사업신청 시 선금 지급을 희망한 경우 결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 통장사본 제출
-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발급에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사. 공정 개선(사업장)

- 공단에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및 설치하여 해당 공정 개선 실시

- (개선 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
- (사업계획 변경) 모델, 수량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변경 신청·승인 필요
 - ※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새롭게 개발된 제품 등 안정성 문제로 제작·판매업체와 AS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증보험 등의 제도 활용 권장

아.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 기계·설비 설치 후 공정 개선이 완료되었음을 투자완료기간 내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요청 실시
 - ※ 지급보증보험증권, 원가검토(정산)보고서 등 투자완료서류 확인 필요
- (원청 지원내역) 원청 또는 협력재단을 통해 지원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자. 투자완료 확인(공단)

-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기존 설비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안전보건 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
 - 투자완료 시 확인된 서류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참여제한 포함)가 될 수 있음
 - ※ 투자완료 확인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발행하는 등 확인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차. 보조금 지급

- 개선이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선금이 지급된 경우 투자완료 시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
 - ※ 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카.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3년차까지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 내 지원 품목을 적정히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조금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
 - 보조금 환수 시 지급 보조금 전액과 사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지급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프레스 방호장치(예시)광전자센서)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보조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단 계	사업 신청	사업 변경	선금급 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사후 기술지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필요시
산재완납증명원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 후 15일 이내)		●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①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②견적서 1부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	●			
신청 설비 카탈로그 또는 도면		●	●			
③사업계획서 1부 (개선계획 및 기존 설비·공정 사진 등 포함)		●	●			
상생협력사업 매칭컨설팅 결과서 1부 (상생협력사업 지원 분야 신청에 한함)		●	●			
④원청지원 예정확인서 1부 (원청직접 지원 분야에 한함)		●	●			
개선 사진					●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⑤원가검토보고서 1부					●	
⑥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	●	
안전인증·자율신고 서류 1부 (안전인증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	●		●	
⑦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	
⑧원청의 지원내역 증명 1부 (원청직접·기금운영기관 지원 분야에 한함)					●	
개선후 위험성평가표					●	
리프트, 노후기계(6종) 폐기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⑨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 ① 동의서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에 따라 같음
- ②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 ③ 개선후하고자 하는 공정의 설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장의 설비 또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④ 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청에서 작성하여 직인 인영(원청 인감증명 첨부)
※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의 양식 참조
- ⑤ 공인된 원가검토(정산)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검토서 제출(작성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⑥ 선금 요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⑦ 개인의 경우 사업주 통장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⑧ 원청 지원내역(통장거래내역 또는 기금입금내역) 제출(원청이 대신 구매하는 등의 증명 불인정)
- ⑨ 사후관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여부 등 검증